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안



구 미 시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가. 구미시에서는 지역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지역 먹거리사업 발굴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음.

나. 이에 정책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2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1) 출연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2) 출연금액 : 600,000천원

(3)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4) 사업내용 : 대형 미래먹거리 사업 발굴 및 기획, 산업정책 분석 등

(5) 출연근거

○ 법 령 : 지방재정법(제18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19조),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조 례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나. 주요 사업

(1) 첨단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 발굴

○ 대형 미래 성장동력 산업 발굴 및 기획

- 신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대형사업 발굴 및 구미 현안사업 기획

○ 지역 신산업 거점 육성 정책

○ 구미 미래 혁신성장전략 수립

- 미래산업, 스마트 산업단지, 기업지원, 일자리 분야 전략적
육성방안 수립

(2)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산업정책협의체 운영 지원

○ 신산업 아이디어 포럼 구성 운영

○ 지역 산업경제 관련 국책연구기관 정기교류 등

(3)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식네트워크 활성화

- 경북 및 구미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 연계 협업 사업 발굴
 -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사업 발굴 지원

(4) 미래전략산업 동향 분석

- 대내외 경제·정책·산업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 구미 지역경제산업 Brief 작성·제공
 - 구미 제조업 실태조사 분석 및 지역기업 공급사슬분석 등

다. 출연의 필요성

- (1) 구미시 현안 분석, 지역 신성장동력사업 발굴·기획,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등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의 정책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연구소 운영 지원 필요
- (2) 국정과제 및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수요 맞춤형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Think Tank 구축하여 산학연관 혁신 주체 간 연계협력을 위한 지식허브기능 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8조
-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19조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5)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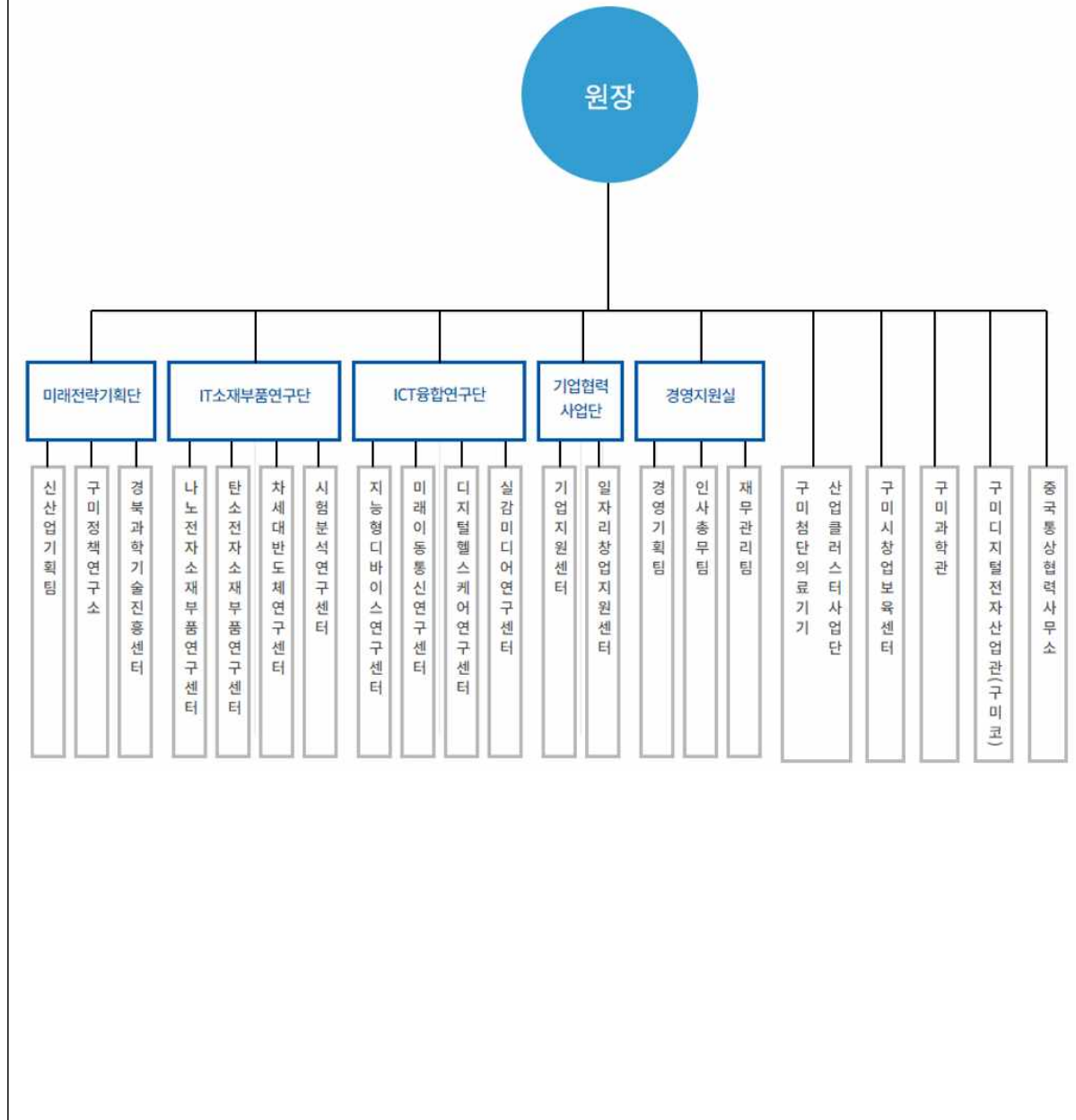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현황

①기관명(주소)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주소) 경북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17			
②기관소개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및 지역특화산업 연구개발 및 육성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③설립근거	○ 법 률 : 민법 제32조 ○ 규 칙 :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조 례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④연 혁	○ 설립일자 : 2007. 7. 30. ○ 기관명칭 변경 : 해당없음	⑤관계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⑥주요기능	○ 신성장동력산업 및 지역 특화산업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 산·학·연·관 지역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협력거점 구축 ○ 지역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 및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 지역 전자정보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수립 및 집행 ○ 제품의 규격·성능시험·품질평가 및 품질인증사업 등		
⑦기관장 소개	○ 성 명 : 김장호 ○ 학 력 : 경북대학교(경제학) 학사,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석사 ○ 경 력 :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경상북도청 기획조정실 실장 現)구미시장		
⑧조 직 기구도	*별첨 참고		
⑨공시책임자	○ (담당자)(소속) 인사총무팀 (직책·성명) 선임 최재완 (전화) 054)479-2016 ○ (확인자)(소속) 인사총무팀 (직책·성명) 팀장 박성원 (전화) 054)479-2012		

[별첨]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조직기구도

□ 기 구 : 4 단, 1 지원실

- 이사장 : 구미시장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소재 및 장비·설비(플랜트를 포함한다) 기술
2.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
3.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
4.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시스템 기술
5.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자원기술
6.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
7. 디자인·브랜드·표준 관련 기술, 유통·전자거래 및 마케팅·비즈니스모델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
8.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
9.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첨단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
10. 삭제 <2013. 3. 23.>
11. 개발된 산업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향형 융합기술
13.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술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2.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2.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기획등에 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2.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연구장비·시설·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集積化) 촉진

4.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의 촉진

5.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6.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재원의 조달)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 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보조할 수 있다.

소관 실 · 과		신성장산업과
입 안 자	과 장	조 영 열
	담 당	신 주 선
	담 당 자	최 영 진 (480-6152)